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위탁에 관한 계약서

광진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3. 인력배치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제3조(사업내용) “갑”은 “을”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을”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노인돌보미 및 서비스 관리자 선발 및 교육, 배치에 관한 사항
2.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노인복지서비스 자원 동원
3. 독거노인 고독감 해소와 정서 함양을 위해 정기적 생활교육 실시
4. 관내 노인복지에 관한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의 실태파악 및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억제를 위한 서비스 간 연계·조정
5. 기타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을”은 “갑”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되, 매월(또는 분기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을”은 지원단체의 지원금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갑”은 지원단체의 지원금 교부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을”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을”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을”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을”은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을”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을”은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등)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갑”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을”이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약정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을”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3조(약정의 효력) ①이 약정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갑”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갑” : 광진구청장

“을” :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인]

